



##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·관리

- ① 담보목적물(제6조의 갈아놓거나 새로 들어온 물건을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이후 점유·사용·보존·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.
- ② 담보목적물의 점유·사용·보존·관리에 있어서는 설정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, 보관장소·보관설비, 기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채권자의 지시가 있으면 설정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

## 제3조 보험계약

-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채권자를 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맺고,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질권을 설정하여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며, 이 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.
- ② 설정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,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 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.
- ③ 설정자가 제1항,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,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.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,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,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 일지라도,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## 제4조 담보목적물의 보존 등

- ① 담보목적물이 멸실·훼손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, 설정자는 그 예방 또는 침해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하고, 채권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②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, 설정자는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
## 제5조 담보가치의 유지

제4조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설정자가 상당액의 물건을 곧 보충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.

## 제6조 담보목적물의 변경

-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, 채권자의 승인을 받겠으며,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어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이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.
- ②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·가공되는 재공품·반제품·완제품·부산물이나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.

## 제7조 담보목적물의 처분

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,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·방법·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,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.

## 제8조 담보목적물의 인도·대리처분

- ①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지체없이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.
- ②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**제9조 물상대위**

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멸실·훼손·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·배상금·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,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,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**제10조 담보목적물의 회보·조사**

채권자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설정자는 조사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.

**제11조 비용부담**

양도담보권의 설정·보전·행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존·관리에 드는 각종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고,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지급금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.

**제12조 다른 담보·보증약정과의 관계**

-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.
-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,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.

**제13조 특약사항**

설정자 : (인)

--	--

※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  
(기재예시 : 1.수령함, 2. 들었음)

1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?	성명 :	(인)
2.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?	성명 :	(인)
상 담 자	직 위 :	성 명 : (인)

**양도담보목적물 목록**

소 재 지		
보관창고명 및 보관장소		
물 건	종 별	
	수 량	
	단 가	
	가 액	
보 험	회 사 명	
	종 별	
	금 액	

## 담보제공자(양도담보권설정자)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

### 양도담보란

-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입니다.
- 따라서 자기소유의 원재료·제품, 기계·기구 등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자산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.

###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

- 「**특정채무담보**」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, 그 채무가 연기·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.
- 「**근담보**」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,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「특정 근담보」

특정된 거래계약(예 :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)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,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.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.

#### 「한정 근담보」

특정한 종류의 거래(예 : 당좌대출거래)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,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.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.

###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

-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별도로 서는 경우, 은행은 담보제공한 부동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